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호 2139 제출연월일: 2024. 7. 23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가등록문화유산은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국가 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없으나, 앞으로는 조사·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등록문화유산을 활용한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9702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"국외 전시"를 각각 "국외 전시, 조사·연구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19702호 근현대문화유산	법률 제19702호 근현대문화유산
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	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
제27조(수출 및 반출 등의 금지)	제27조(수출 및 반출 등의 금지)
① 국가등록문화유산은 국외로	①
수출 또는 반출할 수 없다. 다	
만, <u>국외 전시</u> 등 국제적 문화교	<u>국외 전시, 조사·연구</u>
류를 목적으로 국가유산청장의	
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	
아니하다.	.
② 제1항 단서에 따라 <u>국외 전</u>	② 국외 전
<u>시</u>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	<u>시, 조사·연구</u>
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	
반출을 허가받으려는 자는 반출	
예정일 5개월 전까지 관세청장	
이 운영・관리하는 전산시스템	
을 통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	
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허가	
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	
출하여야 한다.	
③ ~ ⑦ (생 략)	③ ~ ⑦ (현행과 같음)